

2022년 캐나다 안테나숍 운영주체 모집공고

1. 사업목적

- 신규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농식품 전문 매장을 개설하고 홍보·관측 등 마케팅 활동으로 현지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농식품 수출확대

2. 모집 권역 : 캐나다

- (설치제한)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설치코자 하는 위치로부터 10km 이내 한국식품점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 제한

* Google map 도보 기준이며, 솽인솽 · KFZ은 출점거리 제한 적용 예외

3. 사업기간 : 2022년 4월 ~ 11월까지 (9개월 내외)

4. 사업유형 : 일반 안테나솽, 신선농산물 전용 안테나솽(KFZ)

* 일반 : 가공식품 등 한국 농식품 전반 / 신선 : 곡류, 채소류, 과일류 등 한국산 신선농식품 한정

- (매장유형) 상설매장(단독매장, 솽인솽), 임시매장(팝업스토어)

* 단독매장 : 총면적 30m² 이상(전시공간 등 순수 판매면적 70% 이상)

* 솽인솽 : 대형유통매장 등 매장 내 운영하는 매장

* 팝업스토어 : 신선농산물 출하시즌 등 특정시기나 건강식품 · 영유아식품 등 특정 카테고리 전용으로 단기간 운영하는 임시매장(3~6개월)

- 안테나솽 운영형태

농식품 안테나솽		K-Fresh Zone	
일반 농식품 홍보 판매플랫폼		신선농산물 전문 판매플랫폼	
			
솽인솽	로드솽	솽인솽	

5. 지원사항 : 안테나숍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음·시식 관련 경비 등 마케팅 추진 비용의 70~80%(KFZ 80~90%)를 관련 증빙에 따라 사후 정산

- 권역별 기본 지원한도 *종합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구 분	권 역	연간 운영기간	운영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안테나숍 (일반/KFZ)	캐나다	3개월 이상	150백만원	-	-
		6개월 이상	200백만원	140백만원	100백만원
		9개월 이상	250백만원	180백만원	110백만원

* 팝업스토어는 안테나숍 3개월 이상 기준 적용

- 매장수에 따른 추가지원 (KFZ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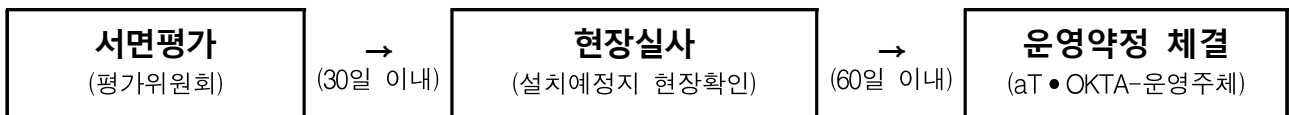
매장 수	3개 매장 미만	3개 이상 5개 미만	5개 이상
지원한도	기본 지원한도	기본 지원한도 × 1.1배	기본 지원한도 × 1.2배

- * 단, 추가매장(팝업스토어 포함)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매장 수에 포함
- * 매장 장치비(인테리어)는 1회만 지원/ 연차별 지원한도는 각각 연차별 70%, 60%로 차감 지원
- * 기 오픈 운영주체는 약정체결시점부터 지원 / 신규 운영주체는 임차 및 장치비의 경우 ‘숍 오픈일’, 그 외 증빙은 ‘약정 체결일’부터 인정

6. 사업의무 : 공사 추천품목 및 제품 도입협조, 월별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출(외부공개 포함), 마켓테스트 등 사업 추진관련 제반사항 협조 등(별도 약정서 체결)

7. 사업 추진절차

- 제출서류 평가 추진 및 선정 업체 개별 통보
- 선정 후 안테나숍 개설 절차



* 운영주체가 선정통보 후 30일 이내에 적정 장소를 계약완료하지 못하거나 60일 이내 안테나숍을 오픈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가능

8. 신청 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 안테나숍 운영코자하는 캐나다 소재 한국산 식품 수입업체
- 신청방법 : aT 뉴욕지사 이메일 (newyork@at.or.kr) 제출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2일(화) ~ 4월 15일(금) 미 동부 17시까지

<제출서류>

1. [첨부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HWP, PDF 파일)
2.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각 1부(JPG, PDF 파일)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당해년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3. '21년 수출입실적(수출입면장 등 관련 증빙서류), (PDF 파일)

- 문의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뉴욕지사
 - 장지희 차장 (TEL. 1-212-889-2561 / rannyl1979@at.or.kr)
 - 고운지 대리 (TEL. 1-212-889-2561 / atbomiakol@gmail.com)

2022. 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뉴욕지사 지사장

[첨부 1] 2022년 해외 안테나숍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022년 해외 안테나숍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운영주체 현황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우)	전화 / FAX	
사업자 등록증번호		매출액	('21년) 백만원 ('22계획) 백만원
입점예정 주요품목	등 00품목	한국농식품 수출입실적	('21년) 천불 ('22계획) 천불
담당자		E-mail	휴대폰

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재무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1. 총자산			-	
2. 총자본			-	
3. 자기자본			-	
4. 유동부채			-	
5. 고정부채			-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당해 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최근년도 서류로 인정

회사소개 등

구 분	내 용
회사소개	
주요 사업내용	
주 수입품 특징	
수입역사	
바이어 특성	
기타(자유기재)	

최근 3개년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 혹은 한국산 농식품 유통판매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				
한국산 농식품 유통판매액				

2. 사업 대상국·지역의 한국식품 보급 현황 및 과제(최소 한 장 이상)

□ 사업 대상국·지역의 시장특성

-
-
-
-

□ 한국식품 보급상황 및 유망 품목

-
-

□ 한국식품 진출 확대를 위한 과제 및 대책 등

-
-

3. 안테나숍 사업계획서

□ 사업추진 목적 및 목표

- 사업실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치목표 설정 및 명기(수출실적, 신상품 수출, 국산농산물 원료비율 高품목수출, 신선농산물 수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 안테나숍 설치장소 관련

- 안테나숍 운영 예정기간 : ~ (개월) / 임대차 기간 : 년
 - * 장기 9개월, 단기는 6개월 또는 3개월 이상
- 매장명(입점 설치장소) : 000 쇼핑센터, 000백화점, 000몰
- 매장 소재지 상권 특징, 접근성 등 구체적으로 기술
-
-
-

○ 안테나숍 설치장소 임대인 개요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우)		전화 / FAX		
담당자		E-mail		휴대폰	

안테나숍 구조 및 디자인 등(면적은 최소 30㎡이상 운영)

- 안테나숍 매장 위치도 또는 배치도, 구조 등
- 설치·장식 계획 : 컨셉트, 디자인 계획 구체적 명시(이미지 삽입 등)

프로모션, 판촉 계획 (세부적으로 기술, 별지 사용가능)

- 정기적 시음시식, 요리시연 등 이벤트 계획

-
-
-
-

- 현지 언론홍보 계획 등 구체적 작성

-
-
-

마켓테스트(신규제품 중심/추후 제품 확정) 추진 관련 사항 등

- 마켓테스트 희망 품목 및 기타 제안사항 등
 - 수입규제, 식품검사 등 예상 문제점, 고려사항 및 대책 포함 작성
 - * 운영주체는 마켓테스트 설문조사를 1제품당 20명 이상 실시하고 분석결과 제출

온라인 사업 지원여부

- 온라인 사업 계획 작성 : 오프라인 매장과 병행하여 추진하되 온라인 플랫폼 구축(유력 쇼핑몰 입점, SNS활용, 홈페이지 제작 등)은 현지 사정에 맞게 추진

4. 제품 취급계획

한국 농식품 제품 취급계획

구분	제품 제조사	제품명	판매 예정가격 (현지화)	자사 취급 브랜드 해당 여부	신규품목 예정	비고
과자류 음료류 소스류 등 부류				해당시 “해당”	해당시 “해당”	신규
∴	∴	∴	∴	∴	∴	∴

* 비고란은 기존 시장진입품목은 “기존”, 신규 시장 진입품목은 “신규” 표기

** 각 제조회사별 또는 브랜드별 제품은 전체 제품 수의 20% 이내 신청(단, 공사의 승인을 통해 50%까지 가능)

5. 예산계획서

지원항목	세부내용 및 산출단가	예산	
		현지화	원화(천원)
매장 임차비·설치비	(예시) ○임차비 : 단가 X 000일 =		
	○설치비 : 단가 X 000개 =		
		
	소계		
광고·판촉· 홍보비 (프로모션)	○광고비 : 단가 X 000회 =		
	○판촉비 : 000 X 000 = - 판촉요원 : 고용 단가 X 000일 - 홍보판넬 : 단가 X 00개 등		
	○홍보비 : 000 X 000 =		
		
	소계		
합계(사업비의 80%이내 기간별 한도설정)			

○ 매장 임차비·설치비, 광고·판촉·홍보비의 실제집행 비용의 80%를 사후 정산

[첨 부 2] 2022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 주체의 역할

□ 안테나숍 장소확보 및 설치

- 유동인구가 많고 사업성과 제고가 가능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하되, 현지 여건에 맞는 안테나숍 운영형태 선정
 - 안테나숍 운영품목이 현지 유통매장에 신규 입점될 수 있도록 현지 유통매장 내부 또는 인근에 설치 추진(권장)
 - 현지 고객 방문유도를 위해 한국식품 전용매장 이미지 구현, 인테리어 및 제품진열 차별화 추진(aT 제공 시안 및 디자인 적용 등)
- aT에서 제공하는 안테나숍 로고를 활용하여 간판 제작
- 안테나숍 설치하는 즉시 관련 현황자료 제출
 - 임대차계약서, 장치설치 내역, 안테나숍 설치사진 등 증빙 자료

□ 안테나숍 운영품목 조달 및 공급

- 운영주체가 취급하고자 운영품목을 직접 수집 및 조달하여 안테나숍에 공급하되 특정 브랜드 위주의 제품비중 높지 않도록 주의
 - 각 제조회사별 또는 브랜드별 제품, 전체 제품수의 20% 이내 취급
- 안테나숍 운영품목 조달 및 공급실적 제출
 - 월별 운영결과 보고서 한국식품 수출입실적 등 증빙자료 첨부

□ 월별 마켓테스트 결과보고서 제출

- 안테나숍 운영 주체는 취급 상품을 현지시장에서 정해진 양식을 활용하여 마켓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월별 보고
- 신규 상품은 필히 마켓테스트를 통해 소비자 반응을 분석 제출해야 하며, 월 1개 이상 품목에 대해 수행

<안테나숍 마켓테스트 실시(안)>

- ▶ 시기 및 장소 : 안테나숍 운영기간 중 시음시식 코너
- ▶ 대상품목 : 안테나숍 주요 품목(신규품목 우선) 중 월 1개 품목 이상
- ▶ 조사대상 : 매장 방문고객, 유통매장 관계자, 바이어 등
- ▶ 조사내용 : 제품인지도, 시음·시식 후 반응(맛, 구매의향 등), 지역 적합성, 기타 고객의견 등 정해진 양식 활용
- ▶ 조사방법
 - 1개 품목당 20명 이상 실시하여 데이터 유효성 확보
 - 성별(남녀), 연령층, 직업 등을 인구통계학 분석
 - 맛, 가격, 품질, 구매의향 등 소비자 기호도 평가
 - 조사 응답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증정
- * 설문조사 모집에 소요되는 경비(설문조사용 시식·시음, 모집을 위한 홍보)는 안테나숍 운영비로 정산 가능하며, 내방객 위주 무작위 설문보다는 희망 인원을 모집하여 실시
- * 전염병,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오프라인 시식 및 마켓테스트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 패키지 배송과 마켓테스트를 연계하거나 온라인 품평회 등으로 실시

□ 내방객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이벤트 실시

- 현지신문, 전단지 등 현지 매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홍보
- 일별 또는 주간별 시음·시식 행사 등 주요 이벤트 안내
-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위한 판매전략 수립
 - 내방고객 대상으로 판촉물 배포, 한국식품 요리시연·체험, 한국식품 구입고객에 대한 주기적 이벤트 홍보 DM발송 등

□ 안테나숍 운영보고서 제출

- 매월 안테나숍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 판매실적, 한국식품 수출입 실적, 신규품목 취급 내용(품목명, 수입·판매액), 마켓테스트(소비자반응 분석결과), 이벤트, 주요성과 등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정해진 기일 내)
 - 안테나숍 설치 및 운영방법, 판매성과, 소비자 반응, 유통매장 내 신규 진입 품목 등 주요성과와 안테나숍 운영주체의 종합의견 등

□ 기타 정보조사 등 비정기적인 공사 제시 업무 수행

2022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 사업비 정산기준

□ 공통기준

- 모든 사업비용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집행된 경비에 한함
- 사업비 증빙서류는 원본
 -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시 대금입금 확인서 등 추가 제출(“aT” 요구 시)
 - 각국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제출이 원칙
- * 다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확정증빙 첨부 불가 시 aT 본사 협의, 승인 후 증빙 인정 가능
- 운영(약정)기간 동안의 KEB 하나은행 송금 보낼 때의 최초고시 평균환율 적용
 - * 중간 정산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하되, 운영기간은 약정개시일로부터 정산시점까지로 적용
- 아래 항목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 공사와 협의, 승인 후 추진

□ 항목별 정산기준

항 목	정산기준				
세부 지원 한도액	<표 1> 종합평가결과 - 운영 후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정산비율 차등				
	구 분	상위 20%	중위	하위 20%	
	안테나숍(일반)	80% 정산	75% 정산	70% 정산	
	K-FRESH ZONE	90% 정산	85% 정산	80% 정산	
	<표 2> 수입의무액 및 판매의무액 (* 2,3년차 운영주체만 해당) - 미달성시 정산비율에서 달성비율 별 정산비율 각각 차감				
	달성비율	80%미만	80~90%미만	90~100%미만	
	차감비율	15%	10%	5%	
	<표 3> 운영기간(운영개월 수) - 미달성 시 달성율에 따라 정산비율 차감 - 개소월은 운영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로 인정				
	운영기간 준수	50% 미만	50~70%미만	70~90% 미만	90%~100%
	차감비율	30%	20%	10%	5%
<표 4> 마켓테스트 횟수 - 미달성시 미충족 횟수에 따라 정산비율 차감					
달성횟수 준수	3회 이상 미충족	2회 미충족	1회 미충족		
차감비율	10%	5%	3%		
* 운영기간 내 월 1회 준수					

항 목	정산기준											
매장 임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장 임차비 및 관련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장 입점에 필요한 제품 품목 등록비, 점포 listing fee 등 포함 전기, 수도, 가스 등 안테나숍 운영과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지원 * 장치비 설치기간 중 임차료 실질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 (단, 오픈일 최대 1개월을 설치준비 기간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 발생비용 적용 유통업체(매장) 발행 증빙서 또는 임차계약서 (임차기간, 규모, 금액, 지급방식 등 명시), 송금증 기타 관련 증빙자료 									
장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음·시식대, 진열대(냉장냉동 포함), 매장 장식·설치비, 이벤트 행사시 특별 장치 설치비, 비품 구입·임차비, 소모품비 * 매장 인테리어 시공 등 안테나숍 오픈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비(인테리어비용)는 1년차 1회에 한하여 2천만원 한도 내 지원하고 만약 1년차에 집행하지 않고 2년차 이후에 집행하는 경우 2년차는 2천만원의 70%, 3년차는 60% 한도로 차감하여 지원함. 또한 매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최초매장에 대해 인테리어비용을 집행한 경우 추가 지원하지 않으며, 최초매장에 비용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매장 기준으로 운영연차를 적용하여 지원한도 비율을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 발생비용 적용 제작실물 견본(사진) 및 관련 증빙서 구매(임대)업체 발행 증빙(사양, 수량, 임대일수 등 명시) 									
홍보비	미디어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오프라인 미디어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 SNS, TV, 신문 등 미디어 홍보비 SNS,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등 ※ 판촉행사, 언론매체 홍보의 경우 건당 20백만원(원화) 이상 홍보비 지출시 관할지사와 사전 협의 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 발생비용 적용 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제작물 사진·영상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실적(보도·방영실적, SNS 확산지수 등)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념품, 디렉토리 등 인쇄물, 명찰·쇼핑백 등 제작 무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홍보·개최영상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증빙 제작물 사진·영상 또는 견본품 								
	대행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행수수료(기획료 포함) * 대행용역비의 1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영수증 홍보대행용역 정산 시, 계약서도 제출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원 및 판촉요원, 통역 고용비 인건비 전체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 발생비용 적용 									
	<table border="1" data-bbox="296 1675 874 1778"> <thead> <tr> <th>사업기간</th> <th>3개월 이상</th> <th>6개월 이상</th> <th>9개월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지원한도 (백만원)</td> <td>15</td> <td>30</td> <td>45</td> </tr> </tbody> </table>		사업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지원한도 (백만원)	15	30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직원 : 점장 및 상주 직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운영내역 등 관련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자, 담당업무, 수행기간 명시
	사업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지원한도 (백만원)	15	30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간이 변동될 시에는 약정 제 5조 4항에 의거 감액 추진 국가별 지원한도 기준(1일/전문가초청경비) · 미주 : US\$200/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보조 : 운영요원, 통역요원, 시식보조요원, 조리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전문 업체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고용> 								

항 목	정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발행 증빙서류 - 근무기본정보 명시 (성함, 일시/장소, 금액) ◦ 수당수령증 (또는 이체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당수령증 - 근무기본정보 명시(성함, 일시/장소, 금액) ◦ 신분증 사본 및 활동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초청경비 - 요리사, 바텐더, MC, 전문강사, 동시통역사 등 	<p style="text-align: center;"><전문업체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발행 증빙서류 - 근무기본정보 명시 (성함, 일시/장소, 금액) ◦ 수당수령증 (또는 이체확인증) ◦ 경력사항 포함 프로필 	<p style="text-align: center;"><직접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당수령증 - 근무기본정보 명시(성함, 일시/장소, 금액) ◦ 신분증 사본 및 활동사진 ◦ 경력사항 포함 프로필 						
<p>시식 행사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식과 관련한 시식 물품비, 소모성 경비(종이컵, 접시 등) ◦ 지원한도 <table border="1" data-bbox="295 1272 874 1406"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style="background-color: #d9ead3;"> <th style="padding: 5px;">사업기간 (개월)</th> <th style="padding: 5px;">3개월 이상</th> <th style="padding: 5px;">6개월 이상</th> <th style="padding: 5px;">9개월 이상</th> </tr> <tr> <td style="padding: 5px;">지원한도 (백만원)</td> <td style="padding: 5px;">3</td> <td style="padding: 5px;">6</td> <td style="padding: 5px;">1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간이 변동될 시에는 약정 제 5조 4항에 의거 감액 추진 ※ 우수신상품 연계 마켓테스트 추진시 해당제품 수입내역 증빙제출에 한해, 시식행사비 지원 한도와 별도로 5백만원 내 추가 지원한도가 가능 	사업기간 (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지원한도 (백만원)	3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발행증빙서류 - 근무 기본정보 명시(성함, 일시/장소, 금액) - 구매상품 세부내역 명시(구매처 등) ◦ 시식행사 진행 담당자 확인서(서명필) ◦ 시음, 시식행사 사진 등 결과보고(월별보고로 같음이 가능한 경우 생략) - 소모품의 경우 구매 영수증
사업기간 (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지원한도 (백만원)	3	6	10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국 수입식품 성분분석비 ◦ 우수신상품 상담회 출장비 - 운영주체 출장비는 사업비 내에서 정산 ◦ 안테나숍 매장내 인터넷 설치비, 사용료 ◦ 사업추진대행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진입 품목, 해당기관 발행증빙서 ◦ 항공비용 영수증 ◦ 설치비, 사용료 증빙 영수증 ◦ 계약서, 세부지출내역서, 관련증빙 등 - 대행용역수수료는 업체 자부담 - 대행용역 체결시 aT본사에 사전승인 요청 의무 								
<p>공통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간 거래내역 등 송금증빙서 필수제출 ◦ 초기투자 고정비용은 월할로 나누어 사후정산지급 									

항 목	정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 환급이 되는 국가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정산지원 	
<p>온라인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기반(사이트, 쇼핑몰, SNS 등) 디자인 개발, 온라인 유통망 등록비(입접비), e-카달로그, 홍보 동영상 제작 ◦ SNS광고비(배너, 슬라이딩 등), 행사관련 농식품 증정품, 온라인 판촉전 등 온라인 방식의 마케팅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인보이스, 결과보고서, 송금증 등 ◦ 행사관련 농식품 증정품의 경우 증빙사진 첨부
<p>신청 불가 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테나숍 운영에 필요한 한국 농식품 수입·운송에 관한 경비 ◦ 음식비, 교통비, 개인통신비 ◦ 전자기기, 홍보장치(모니터 등), 보안기기 등 자산성 물품 구입비(렌탈은 정산 가능) ◦ 운영주체가 실시하는 다른 사업과 구별할 수 없는 경비 등 본사업과 연관성을 구별할 수 없는 경비 	